

「평창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1년 01월 11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21년 01월 20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64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21년 01월 20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행정과장)

가. 제안이유

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의 수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설치·운영하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구성·운영 방안을 규정하여 재난·재해 발생 시 자원 봉사활동 업무 전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제정 목적 및 군수의 책무 명시(제1조~제2조)
-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및 구성(제3조~제4조)
- 단장의 임무 및 실무팀의 편성(제5조~제6조)
- 지원단 설치 시 고려사항(제7조)
-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방법(제8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천소영)

○ 본 조례안은

2019년 12월 개정된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이
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의 제17조의2를 신설,
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
해당지자체 조례에 위임하고 있어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가 있습니다.

○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

안 제4조에서는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

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단장의 임무 및 실무팀의 편성

안 제7조에서는 지원단의 설치와 관련한 고려사항

안 제8조에서는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한 대책본부장의 재난상황
정보의 신속한 제공 의무

안 제9조에서는 자원봉사활동 후 평가회의 개최와 기록에 대하여
각각 규정하였습니다.

○ 조례안은

재난·재해 발생 시 자원봉사자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
통합적인 지원 체계 구성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 보며
제정에 따른 상위법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.

다만, 본 조례안 제출부서인 자원봉사 책임부서와 재난안전 책임부서가
다른 만큼 향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에 있어 재난 발생 시
발빠른 대응에는 부서 간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부.

평창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책무) 평창군수는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,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3조(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·운영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6조제2항에 따른 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“대책본부”라 한다)의 본부장(이하 “대책본부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(이하 “지원단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한다.

제4조(구성)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(이하 “단장”이라 한다)과 단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지원단의 공동단장은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과 「평창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」에 따른 평창군 자원봉사센터(이하 “자원봉사센터”라 한다)의 장이 된다.

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

람이 된다.

1.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평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 소속 공무원
2. 자원봉사센터의 직원
3. 「재해구호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
4.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

제5조(단장의 임무)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.

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,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실무팀의 편성)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.

1. 상황총괄팀
 2. 활동관리팀
 3. 활동지원팀
 4.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 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
-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, 재난

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7조(지원단의 설치)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.

1.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
2. 「재해구호법」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
3. 자원봉사자의 규모
4.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
5.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

제8조(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)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 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.

② 대책본부장은 「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」 제7조에 따른 상황 판단 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.

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
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

제9조(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)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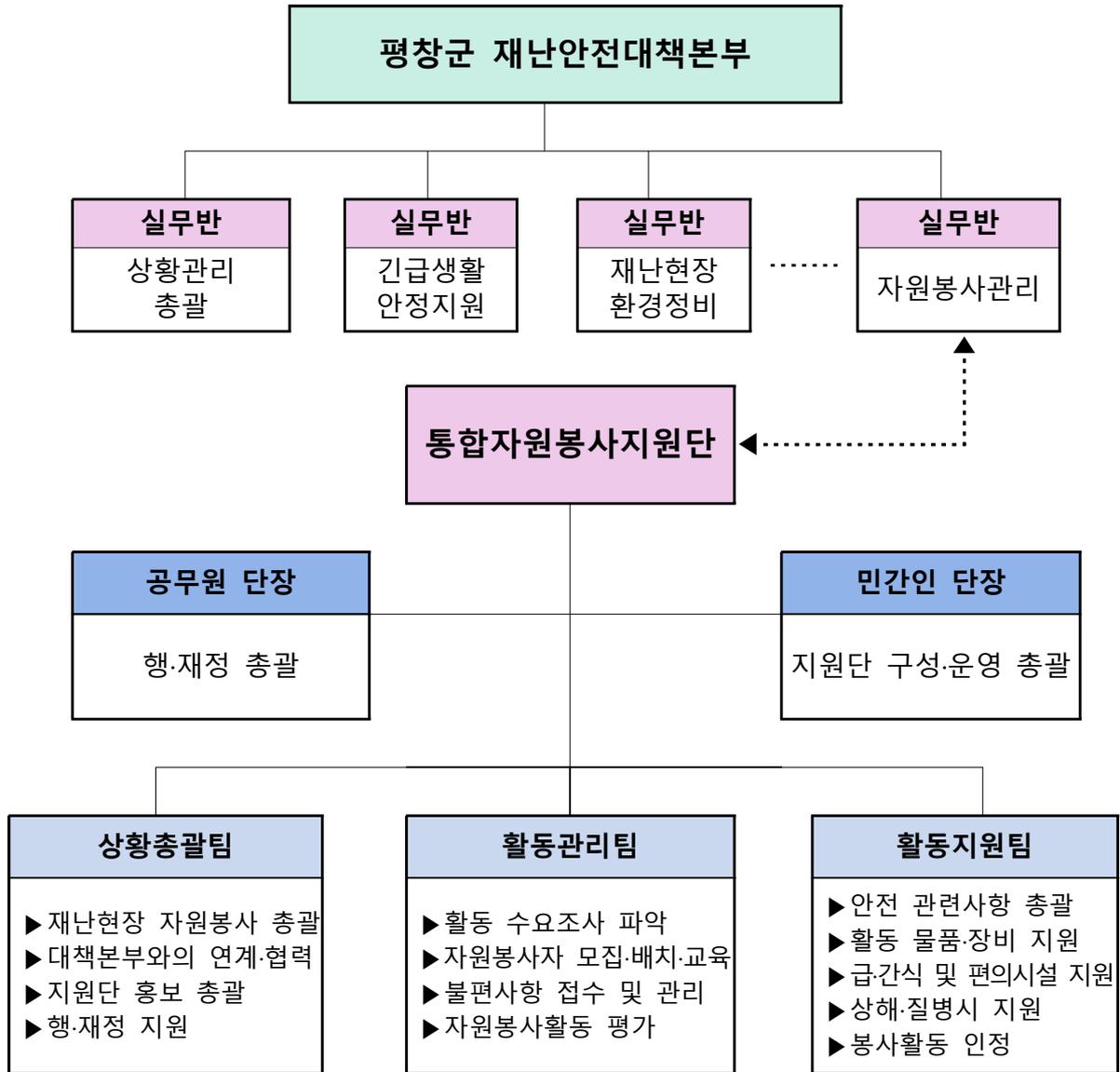
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,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, 자원봉사활동의 사진·영상,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편제(제6조제2항 관련)



[별표 2]

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업무 구성(제6조제2항 관련)

< 직무분담표 예시 >

팀명(예시)	직위	담당 사무
단장	평창군 행정과장	▶ 지원단 행.재정 총괄
	자원봉사센터장	▶ 지원단 구성·운영 총괄
상황총괄팀	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	▶ 재난현장 자원봉사활동 총괄
	평창군 행정과 자치행정담당	▶ 재난 자원봉사활동 관련 지원 사항 발굴 ▶ 대책본부와의 연계(상황 공유·보고 등)
	평창군 행정과 주무관	▶ 지원단 관련 홍보 총괄 ▶ 지원단 관련 행.재정 지원
활동관리팀	자원봉사센터 팀장	▶ 자원봉사활동 수요조사 ▶ 자원봉사자 불편사항 접수 및 관리
	자원봉사센터 교육주임	▶ 자원봉사활동 관련 모집, 배치, 교육 ▶ 자원봉사활동 평가(모니터링, 활동기록 등)
활동지원팀	자원봉사센터 팀장	▶ 재난현장 자원봉사 안전 관련 사항 총괄 ▶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·장비 지원
	자원봉사센터 전산주임	▶ 자원봉사자 급·간식 및 편의시설 지원 ▶ 자원봉사자 상해·질병시 지원 ▶ 봉사활동 인정(시간 인정, 기부금 확인서 발급 등)

비 고

-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팀은 단장이 지역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직위 및 담당 사무를 정한다.